

약관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양도성예금증서(CD) 특약』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(구)하나은행 약관을 (구)외환은행 변경약관 반영하여 구행명 삭제후 통합약관으로 개정

개정 전(구.하나은행)	개정 후	비 고
<p>제 1 조 증서발행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다.</p> <p>제 2 조 <신설></p> <p>제 3 조 <신설></p> <p>제 4 조 <신설></p> <p>제 2 조 만기일 전 지급거절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는다.</p> <p>제 3 조 만기후 이자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단, 만기일이 임시공휴일 또는 새로 지정되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일수에 대하여 가입당시 약정이율을 적용한다.</p> <p>제 4 조 등록발행 ① 양도성예금증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채등록법 규정에 따라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. ②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권리행사는</p>	<p>제 1 조 증서발행과 권리행사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하며, <u>거래처는 모든 권리행사를 이 증서로 합니다.</u></p> <p>제 2 조 가입대상 <u>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.</u></p> <p>제 3 조 최저가입금액 <u>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액면금액기준으로 1 천만원 이상으로 합니다.</u></p> <p>제 4 조 가입기간 <u>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0 일 이상 5 년 이내 에서 일단위로 합니다.</u></p> <p>제 5 조 만기일 전 지급거절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일 전에 지급하지 <u>않습니다.</u></p> <p>제 6 조 만기후 이자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후 이자를 지급하지 <u>않습니다.</u> 단, 만기일이 임시공휴일 또는 새로 지정되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일수에 대하여 가입당시 약정이율을 <u>적용합니다.</u></p> <p>제 7 조 등록발행 ① 양도성예금증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채등록법 규정에 따라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<u>않습니다.</u> ②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권리행사는</p>	<p>(구.외환 약관 추가 반영/설명 강화)</p> <p>(조 변경/ 문구정비)</p> <p>(상동)</p> <p>(상동)</p>

<p>각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<u>따른다</u>.</p> <p>③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에 <u>따라</u> 거래처가 <u>부담한다</u>.</p> <p>제 8 조 <신설></p> <p>제 5 조 관련법규의 준용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<u>따른다</u>.</p>	<p>각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<u>따릅니다</u>.</p> <p>③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에 <u>따라</u> 거래처가 <u>부담합니다</u>.</p> <p>제 8 조 <u>면책</u>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(이자 포함)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이어서 증서를 분실·도난 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<u>않습니다</u>. 다만,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<u>그러하지 않습니다</u>.</p> <p>제 9 조 관련법규의 준용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<u>따릅니다</u>.</p>	<p>(조 변경/ 설명강화)</p> <p>(조 변경 / 문구 정비)</p>
---	---	---

개정 전(구.외환은행)	개정 후	비 고
<p>제 1 조 증서발급과 권리행사 양도성예금증서(구 외환은행)은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하며, 거래처는 모든 권리행사를 이 증서로 합니다.</p> <p>제 2 조 가입대상 ~ 제 3 조 최저가입금액 (생략)</p> <p>제 4 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0 일 이상 <u>2년</u> 이내에서 일단위로 합니다.</p> <p>제 5 조 만기일 전 지급거절 (생략)</p> <p>제 6 조 만기후이자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후이자를 지급하지 <u>않는다</u>.</p>	<p>제 1 조 증서발급과 권리행사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하며, 거래처는 모든 권리행사를 이 증서로 합니다.</p> <p>제 2 조 가입대상 ~ 제 3 조 최저가입금액 (좌동)</p> <p>제 4 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0 일 이상 <u>5년</u> 이내에서 일단위로 합니다.</p> <p>제 5 조 만기일 전 지급거절 (좌동)</p> <p>제 6 조 만기후이자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후이자를 지급하지 <u>않습니다</u>. 단, 만기일이 임시공휴일 또는 새로 지정되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일수에 대하여 가입당시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.</p>	<p>(구행명 삭제)</p> <p>(통합내규와 일치)</p> <p>(설명추가/ 문구정비)</p>

<p>제 7 조 면책 <u>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(이자 포함)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이어서 증서를 분실·도난 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,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</u></p> <p>제 8 조 등록발행 ① 양도성예금증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<u>공사채등록법 규정에 따라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</u> ② <u>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권리행사는 각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u> ③ <u>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합니다.</u></p> <p>제 9 조 관련법규의 준용 (생략)</p>	<p>제 7 조 등록발행 ① <u>양도성예금증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채등록법 규정에 따라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</u> ② <u>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권리행사는 각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u> ③ <u>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합니다.</u></p> <p>제 8 조 면책 <u>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(이자 포함)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이어서 증서를 분실·도난 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,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</u></p> <p>제 9 조 관련법규의 준용 (좌동)</p>	<p>(조 변경)</p> <p>(조 변경)</p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